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888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22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회부 일자	위원회 상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17	김정재의원	'12.2.6	제23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원회 제2차 회의 (12.6.2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74	박양숙의원	'12.6.18	

위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38회 서울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12.6.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서울의 경우 1만 8천여 명(학업중단률: 1.5%)으로 학업중단률이 전국 수준(1.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은 계획없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청소년은 나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의 틀 밖에 존재함으로써 공적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에 비하여 열악한 경제적 생활조건에 놓여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안하는 바이다.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

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협력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서울시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본다.